

## I. 언론자유규제기구 독일 언론평의회

독일에서 언론피해 구제는 대표적인 언론자유규제기구인 ‘독일 언론평의회(Deutscher Presserat)’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언론계 내부의 자발적인 의지로 설립된 조직이었다. 설립 초기 언론평의회는 최우선 목적은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막고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것이었고, 언론의 잘못을 바로잡고 언론 보도로 인한 불만을 처리하는 기능은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1973년 ‘언론윤리강령(Pressekodex)’을 제정하고 불만처리위원회를 만들면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기능을 체계화했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언론윤리강령을 수차례 개정해왔다. 하지만 자율규제기구로서 독일 언론평의회는 결정은 법적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언론 보도의 영향력과 파급력, 지속력이 갈수록 커지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자율 규제에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1. 독일 언론평의회 설립과 발전

독일 언론평의회는 언론자유를 천명한 독일 <기본법(Grundgesetz)>을 근간으로 1956년 11월 20일 당시 서독의 수도였던 본(Bonn)에서 설립됐다.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가 이끄는 보수 정부는 소위 연방언론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언론규제기구를 설립하려고 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출판인 5명과 기자 5명이 모여 영국의 ‘언론평의회(The Press Council)’를 본뜬 독일 언론평의회를 설립하게 된다. 초창기 언론평의회는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언론 자유를 수호하고 둘째, 언론 방종을 스스로 막으면서 언론 윤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 독일 라이프치히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학 석사, yujina.lee@gmail.com

독일 언론평의회는 소위 '렉스 소라야(Lex Soraya)' 사건을 통해서 대중에게 처음 이름을 알리게 된다. 독일 주간지 《슈테언(stern)》이 1958년 4월 19일 보도한 페르시아의 왕비 소라야에 대한 기사가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자 독일 정부는 외국 원수의 사생활 보도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킨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거부하는 동시에 《슈테언》의 해당 기사에 대해 '견책(Missbilligung)' 처분을 내린다.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을 거부하면서 언론계 내부의 자정 기능을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폐기되었지만, 정작 '견책' 처분을 받은 《슈테언》은 독일 언론평의회 결정에 반발했다. 《슈테언》 편집장인 헨리 난넨(Henri Nannen)은 독일 언론평의회 조직과 '견책' 결정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이라며 함부르크 법원에 제소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함부르크 법원은 1959년 12월 17일 언론평의회 활동은 언론 자유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언론평의회 존재 의의를 확인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1960년대 주언론법이 제정될 당시 '주언론법을 위한 기본원칙(Leitsätze für ein Landespressegesetz)'을 제출함으로써 각 연방주 언론법의 형식과 내용에도 영향을 준다. 현재 독일 각 주의 언론법은 그 내용과 형식이 거의 동일하며, 이는 언론평의회가 선구적으로 제안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독일 언론평의회는 독일의 대표적인 언론자율규제기구로서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초창기 독일신문발행인연방협회(Bundesverband Deutscher Zeitungsverleger, BDZV), 독일기자협회(Deutscher Journalisten-Verband, DJV), 독일잡지발행인협회(Verband Deutscher Zeitschriftenverleger, VDZ) 등 세 단체로 이루어졌다가 1960년 독일 기자노조(Deutsche Journalistinnen- und Journalisten-Union(dju) in ver.di)가 합류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다. 1972년에는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불만처리위원회(Beschwerdeausschuss)를 설치하고 불만처리규정을 제정한다. 이어 1973년 12월에는 언론윤리강령을 제정해, 불만처리 심의의 기준이자 근거로 삼는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불만 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독일 연방의회는 1976년 8월 25일 <독일 언론평의회에 설치된 불만처리위원회 독립성 보호를 위한 법안><sup>1)</sup>을 통과시킨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 법에 따라 언론평의회에 조건 없이 매

1) Gesetz zur Gewährleistung der Unabhängigkeit des vom Deutschen Presserat eingesetzten Beschwerdeausschusses (1976. 8. 18).

년 22만 3천 유로<sup>2)</sup>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을 통한 독립성 훼손을 막기 위해서 이 지원금은 언론평의회 전체 운영 예산의 49%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51%는 언론평의회 소속 각 회원사들의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이로써 언론평의회는 법제도적으로 재정을 확보해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기반을 다지게 된다.

1980년대 초 독일 언론평의회는 언론 발행인과 기자 사이에 ‘공개경고(öffentliche Rüge)’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차례 위기를 맞이한다. 불만처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개 경고’ 결정을 받은 언론사는 이 사실을 해당 매체에 게재해야 하는데 당시 많은 언론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1981년 언론평의회 소속 기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의석을 내려놓았고, 언론평의회는 결국 1981년 12월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하기에 이른다. 이 갈등은 3년이 넘도록 이어졌고 1985년 12월이 되어서야 언론평의회는 새로운 운영원칙을 세워 다시 출발할 수 있었다. 변화된 운영원칙의 핵심은 독일 언론평의회 소속 언론사가 공개 경고의 게재를 약속하는 ‘자기의무서약서(Selbstverpflichtungserklärung)’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1988년, 언론평의회 소속 대부분의 언론사가 자기의무서약서를 제출하면서 독일 언론평의회는 다시 정상궤도에 오르게 된다. 이후 독일 언론평의회는 1985년에서 1989년 사이의 언론평의회 심의결과와 통계를 모은 ‘흑백서(Schwarzweißhandbuch)’를 처음으로 펴낸다. 이후에는 심의 통계와 조직의 성과 등을 모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1990년 10월 독일 통일 이후에는 언론평의회 영역이 자연스럽게 전 독일로 확장되었다. 언론평의회는 1991년 9월 통일 이후 베를린 장벽을 지키던 동독 군인에 대한 형사소송 과정에서 장벽 희생자들의 사진을 계속해서 보도하는 언론 행태에 대해 비판하면서 동독 역사 청산과정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1993년 11월 26일 언론의 주요 취재 대상인 경찰 취재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본원칙을 제정한다. 이는 언론평의회 소속 언론 단체와 독일 공영방송인 ARD, ZDF, 민영방송협회(Verband Privater Rundfunk) 등이 독일 연방정부의 내무부회의에 모여 결의한 것이다. 독일 언론평의회 활동이 조직 내부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과 상호작용하면서 조직의 위상을 높이는 과정이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1990년대 후반 독일 연방정부가 추진한 용의자 전화도청 관련 법, 범죄 수사과정

---

2) 법률 제정 당시 지원금은 매년 8만 마르크였으며, 2010년 이후 매년 22만 3천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에서 언론인들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언론인과 정보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로 판단하고 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섰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1999년 6월 영국 런던을 기반으로 한 ‘유럽 독립 언론평의회 연합(AIPCE, Alliance of Independent Press Councils of Europe)’ 창설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2000년 유럽지역 15개 언론자율규제기구의 대표들이 독일 본에 모여 유럽연합의 언론자유 및 기본권 관련 논의를 이어갔으며,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언론평의회와 함께 <유럽연합 기본권헌장(Die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에서 정보와 언론의 자유를 강화하는 조항을 넣는 데 기여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이처럼 독일 국내뿐 아니라 유럽연합 차원의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노력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독일 <연방개인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개정과 함께 또다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한다. 독일은 2001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방법을 개정했다. 유럽연합의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언론, 예술, 문학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개인정보는 엄격한 개인정보보호의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sup>3)</sup> 이에 독일 연방정부와 언론평의회는 언론 취재의 자유와 언론이 활용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등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감시 및 규제제도가 아닌 자율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한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언론의 취재 정보 활용에 대한 자율규제기구의 역할을 위임 받고, 언론의 편집정보 보호에 관한 불만 심의만 전담하는 별도의 불만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독일에서도 디지털을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독일 언론평의회 역할은 온라인 언론 매체에까지 확대된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2009년 1월 1일 정관과 불만처리규정 개정을 통해서 온라인 영역의 언론 보도도 심의 대상임을 밝히고, 언론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서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

3) Richtlinie 95/46/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4. Oktober 1995 zum Schutz natürlicher Personen bei der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und zum freien Datenverkehr (1995. 10. 24).

## 2. 독일 언론평의회의 조직과 임무

독일 언론평의회는 네 개의 언론 조직이 연합한 형태의 비영리기관으로 2018년 7월 현재 독일 베를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연합협의회(Trägerverein), 총회(Plenum), 불만처리위원회(Beschwerdeausschuss)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협의회는 독일신문발행인연방협회(BDZV), 독일기자협회(DJV), 독일잡지발행인협회(VDZ), 독일 기자노조(dju in ver.di) 등 네 개의 기관에서 각 2명씩 파견한 8명으로 이루어진다. 연합협의회는 1년에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의결권이 있으며, 독일 언론평의회의 조직과 재정을 책임지는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독일 언론평의회의 총회는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행인 기관과 언론인 기관에서 절반씩 의석을 나누어 가진다. 총회 의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총회 의원은 모두 언론 분야에 종사해야하며, 이는 독일 언론평의회가 철저한 언론 내부의 자율규제 기관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불만처리위원회는 독일 언론평의회에 접수되어 사전심사를 거친 불만 사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2018년 6월 현재 3개의 불만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심의위원 8명과 대리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한 곳은 편집정보 보호(Redaktionsdatenschutz) 분야를 다루는데 언론이 취재과정에서 획득한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 사안만 집중적으로 담당한다. 이곳은 독일 언론평의회 소속 심의위원 5명과 독일광고신문연방협회(Bundesverband Deutscher Anzeigenblätter)에서 파견한 심의위원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만처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재선이 가능하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현재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 심의를 주된 임무로 삼고 있지만, 언론 관련법 개정안 등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의견표명서(Stellungnahme)’를 발표함으로써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독일 언론평의회 정관에 명시된 주된 임무는 첫째, 언론의 폐해를 직시하고 바로잡으며, 둘째, 개개의 신문, 잡지의 보도 및 인터넷의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심의하고 근거가 있는 경우 주의, 질책, 경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셋째, 언론 활동에 대해 조언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넷째, 뉴스 정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지지한다. 다섯째,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과 생각의 자유를 해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는 독일 언론평의회 소속 단체 전원의 합의로 이를 저지하며,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및 편집정보보호 분야에서 자율규제 및 감시기

구를 조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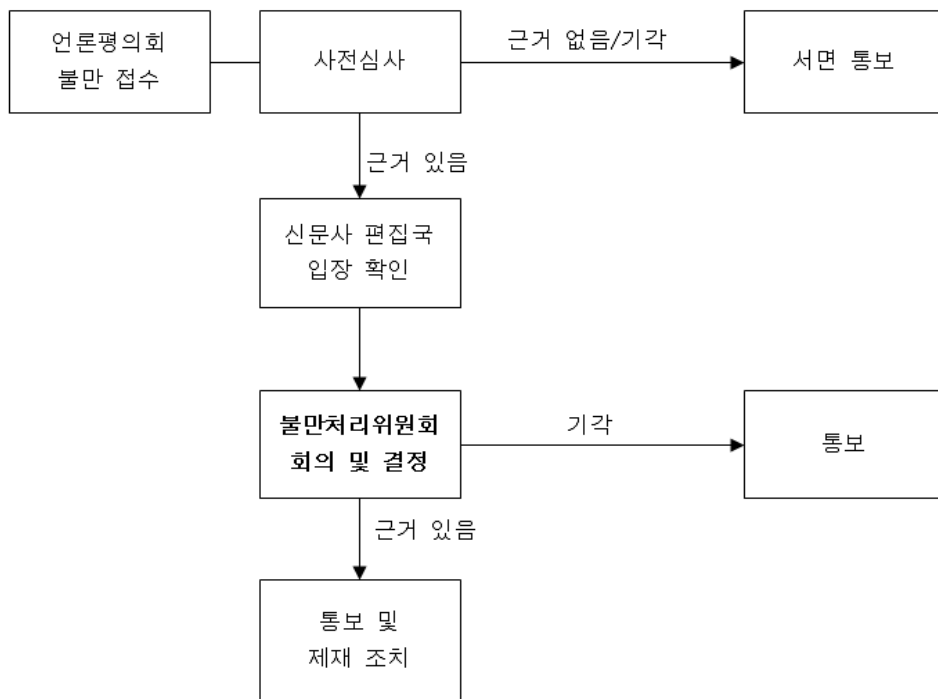
### 3. 독일 언론평의회의 피해 구제 절차

독일 언론평의회는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과 온라인의 언론 콘텐츠에 대한 불만 사안을 심의한다. 방송 언론과 손해배상, 광고에 관한 사안은 언론평의회의 소관이 아니다. 언론 보도에 불만이 있는 독자들은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서 불만을 접수할 수 있으며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지 1년 안에 불만을 접수해야 한다. 불만 심의는 총 3단계로 나뉘는데 사전심사와 불만처리위원장 직권결정, 불만처리위원회의 구두 회의로 분류된다. 접수된 사안이 접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 언론평의회는 불만 접수를 기각한다. 불만 접수자는 기각 된 이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사안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만처리위원회로 이관된다. 불만처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불만 접수 사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요청하고, 해당 사안이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불만처리위원회 의장이 직권으로 접수 사안에 대해 ‘근거 없음(unbegründet)’으로 결정하거나, 근거는 있지만 제재 없음, 혹은 가장 낮은 단계의 제재인 ‘주의(Hinweis)’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불만처리위원장의 직권 결정에 대해서도 불만 접수자는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구두 회의는 불만 접수자와 해당 언론사 관계자 및 증인 등이 함께 출석할 수 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증거자료 및 증언 등을 종합해 결정을 내린다. 해당 보도가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주의(Hinweis)’, ‘견책(Missbilligung)’, ‘비공개 경고(nicht-öffentliche Rüge)’, ‘공개경고(öffentliche Rüge)’를 내릴 수 있다. 비공개 경고는 주로 피해자 보호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결정된다. 해당 언론사가 불만처리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이미 문제가 되는 보도를 정정했을 경우에는 ‘근거 있음(begründet)’으로 판단되어도 제재 결정을 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공개경고’를 받은 경우 언론사는 이 사실을 독자들에게 명백한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언론평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집행을 강제할 수 없다. 언론평의회는 ‘공개경고’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속 언론사로부터 언론평의회의 공개경고 결정을 따르겠다는 ‘자기의무서약서’를 받는다. 2006년 기준으로 약 855개의 언론 발행사가 ‘자기의무서약서’를 제출했으

며 이는 독일에서 발행되는 언론의 약 90%에 이르는 수준이다(Heimann, 2009). 독일 언론평의회는 ‘이빨 없는 호랑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강제적인 제재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Bermes 1989; Stapf 2010).

[그림 1] 독일 언론평의회 불만심의절차



\* 출처: 독일 언론평의회

#### 4. 언론윤리강령

독일 언론평의회가 1973년 제정한 언론윤리강령은 오늘날까지 독일 언론의 대표적인 직업 윤리로 인정받고 있다. 언론윤리강령은 언론평의회 불만접수위원회 심의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언론 업계의 업무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한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1973년 12월 12일 언론윤리강령을 당시 연방 대통령인 구스타프 하이네만(Gustav W. Heinemann)에게 제출한다. 언론윤리강령은 이후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맞게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독일 통일 이후 1990년 2월 28일 언론윤리강령을 새롭게 썼으며,

독일 언론평의회는 2001년 11월 28일 개정된 언론윤리강령을 당시 연방 대통령인 요하네스 라우(Johannes Rau)에게 또다시 제출한다. 이는 언론윤리강령이 국가의 대표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며 특별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절차는 아니다. 언론윤리강령은 이후 디지털 환경에 따른 변화를 감안해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재 언론윤리강령은 총 16조 47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론윤리강령의 각 조에서는 선언적인 윤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각 항에서 세부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제1조에는 언론 최고의 사명으로 진실 존중과 인권 존중, 진실 보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이러한 언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언론은 보도에 신중함을 기해야 하며, 보도된 내용이 이후에 오보로 판명될 경우 이를 즉시 정정해야 한다. 이어 제4조~제7조 및 제15조에는 언론의 취재 방법에 대한 윤리를 다루고 있다. 언론은 개인 정보 및 뉴스, 취재 정보, 사진 등을 획득할 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직업 기밀과 취재원 등과 합의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기자와 발행인은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직무를 행해서는 안 되며 예를 들어 정부 기관이나 경제 단체 등의 소속으로 동시에 일할 수 없다. 언론은 기사와 광고를 명백하게 구분해야 하며, 보도의 독립성과 신뢰도를 해칠 수 있는 그 어떤 종류의 혜택도 받아서는 안 된다. 언론윤리강령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개인의 인격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언론 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존중할 것이며, 종교와 세계관, 관습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언론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폭력과 잔인함, 고통에 대한 자극적인 묘사를 피해야 한다. 성별과 장애, 인종적, 종교적, 사회적, 국가적인 소속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언론윤리에 어긋난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보도할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편견에 주의해야 한다. 의학 관련 사안을 보도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공포감 또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과장된 묘사는 피해야 한다. 언론윤리강령의 마지막 제16조는 공개 경고 발행에 관한 것으로 언론평의회 경고 결정에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 언론평의회가 언론윤리강령을 개정한 시기와 그 내용을 보면 당시 주요한 언론 이슈를 엿볼 수 있다. 언론평의회는 2017년 3월 22일자로 언론윤리강령 제12조 ‘차별’ 부문에 새로운 행동지침을 추가했다. 이 행동지침에 따르면 범죄행위에 대해 보도

할 때 용의자의 인종, 종교나 또 다른 소수자 그룹의 소속을 언급함으로써 개인의 범죄를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한 용의자의 소속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이 개정안은 2015년 12월 31일 독일 쾰른에서 발생한 집단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많은 언론이 사건의 용의자들이 북아프리카 출신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강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처럼 독일 언론평의회는 언론윤리강령 보완을 통해서 해당 이슈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4)</sup> 언론윤리강령은 독일 언론평의회 소속 인쇄 및 온라인 매체뿐 아니라 독일의 최상위 방송법인 <방송국가협약(Rundfunkstaatsvertrag, RfStV)>에도 명시되어 방송 언론 보도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이뿐만 아니라 언론 관계 소송에 있어서도 보도 윤리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 II. 방송 언론의 피해구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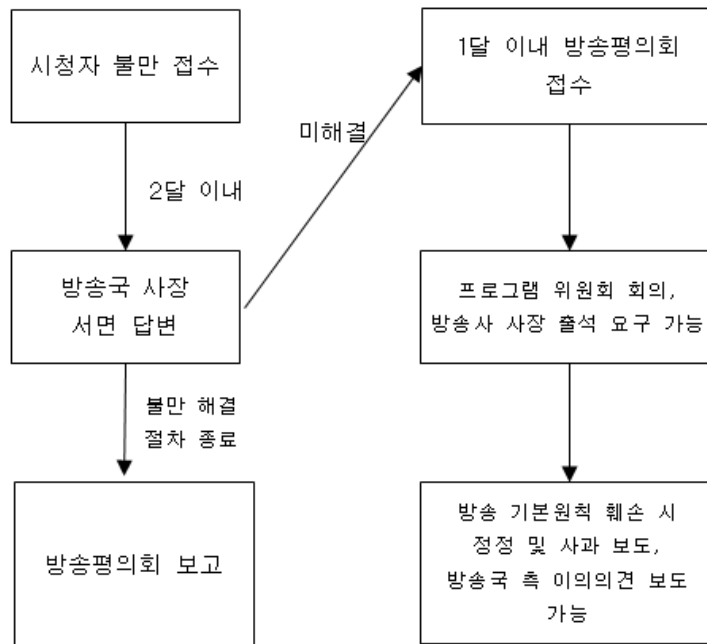
독일의 대표적인 언론자율규제기구인 독일 언론평의회는 방송 보도로 인한 시청자들의 불만 사항은 심의하지 않는다. 독일에서 방송 보도로 인한 불만 심의 시스템은 독일 방송 관련법에 따라 법적 규제 하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 각 방송국이 직접 불만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독일은 <방송국가협약>을 통해서 공영 및 민영방송국의 기본 원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국가협약>에는 언론 보도를 할 때는 독립성, 사실성, 진실 보도와 출처 확인, 뉴스와 의견의 분리 등 필수적인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 언론윤리강령에 맞게 보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청자들의 불만 심의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방송국의 하위 규정으로 명시되어 규제된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뤄진다. 방송 언론의 불만 심의 시스템은 크게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독일 공영방송은 각 주를 근거로 한 8개 공영방송과 이들의 연합체인 제1공영방송 ARD, 제2공영방송 ZDF가 모두 개별적으로 시청자들의 불만 접수를 받는다. 다만 공

4) 이 사건은 반난민 및 반이민자 정서가 커지던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오히려 반난민 정서를 막기 위해서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컸으며, 독일 언론평의회는 언론윤리강령 개정 조항이 여론의 정서와는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영방송협의체인 ARD는 불만접수를 받으면 시청자가 속해있는 지역의 공영방송국으로 불만 사항을 이관한다. ‘서독일방송(Westdeutschland Rundfunk)’<sup>5)</sup>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영방송의 불만심의 절차를 알아보면, 먼저 언론 보도에 불만이 있는 시청자들은 방송국 시청자센터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 불만 접수는 해당 보도가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 해당 방송국 사장(Intendant/in)은 불만 사안에 대해 두 달 이내에 서면으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하며, 불만처리가 두 달 이내에 끝나지 않거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자는 한 달 이내에 방송국의 최고 의결기구인 방송평의회(Rundfunkrat)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방송평의회는 이 사안의 근거와 타당성을 논의하고, 보도 내용이 프로그램의 기본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정정 및 사과 보도가 이루어진다. 만약 방송국 사장이 방송평의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의견도 함께 보도할 수 있다. 방송국 사장은 방송평의회에 불만 접수 상황과 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 내용은 방송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그림 2] 독일 방송국의 불만 심의 절차



\* 출처: 서독일방송법 참고

5) Gesetz über den Westdeutschen Rundfunk Köln (2013. 12. 31).

독일 민영방송의 경우 각 방송국과 민영방송을 관리하는 주미디어청(Landesmedienanstalt), 주미디어청연합(die medienanstalten)을 통해서 불만 심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별 방송국에서 먼저 불만을 접수 및 심의하며, 방송국은 불만 심의가 이루어진 지 한 달 이내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한 달 이내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시청자는 주미디어청에 불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주미디어청은 해당보도가 방송의 기본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면 기록으로 남기고 이는 추후 민영방송의 인허가 등의 결정에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독일 방송국의 불만 심의 절차는 일차적인 결정을 각 방송국에 위임하면서 방송국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불만심의라는 제도가 방송국에 대한 비판적인 사안이 많은 만큼 불만 심의 활동이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으며, 자율규제 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또한 독일 언론평의회와 같은 통합적인 심의 기관이 없고, 언론윤리강령을 지키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해석의 여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독일방송은 2017년 1분기 불만처리 보고서에서 “언론윤리강령은 출판업자와 기자협회의 자율적인 직업윤리로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을 위한 것은 아니며 프로그램 불만 접수 처리에 고려해야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Wehner, 2017, 8쪽).

한편 독일 언론평의회는 매년 접수되는 사건의 절반 이상을 심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접수 내용이 심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방송 보도 관련이거나 접수 기한을 넘긴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5년 기준 독일 언론평의회에는 총 2,358건의 불만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 1,219건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16년에는 총 1,851건 중 1,123건이 심의에서 제외되었다. 이 중 정확히 몇 건이 방송 보도로 인한 불만 접수인지는 공개되지 않지만, 방송 보도에 관련한 불만도 독일 언론평의회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 III. 소송을 통한 법적 구제

독일 언론평의회의 불만 심의와는 별개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독일 <형법(Strafgesetzbuch)>상 ‘모욕(Beleidigung)’ 죄는 언론 보도 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피해 중 하나다. 독일 <형법> 제 185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모욕이 행위를 통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186조 ‘비방(Üble Nachrede)’에 따르면 타인을 경멸하거나 세간의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 경우 1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 행위가 공연히 또는 문서<sup>6)</sup>의 반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197조 ‘증상(Verleumdung)’ 죄는 확실한 인식에 반해 타인을 경멸하거나 세간의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혹은 신용을 위해하기에 적합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연히 또는 문서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5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제188조 정치인에 대한 모욕죄는 처벌 수위가 더 높는데, 최대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모욕 행위가 신문이나 잡지 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형벌을 받은 경우 <형법> 제200조에 따라 모욕 행위가 이뤄졌던 동일한 매체를 통해 판결을 공시해야 한다.

독일에서 언론 보도의 ‘초상권(Recht am eigenen Bild)’에 관한 사항은 <조형예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sup>7)</sup>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 법률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르면 초상은 피사체가 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배포 혹은 공개 전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진이 시사적 영역에 있거나, 풍경 및 기타 장소의 사진에서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당사자가 참여한 집회, 행렬 및 유사한 행사 사진인 경우에는 초상권에서 제외된다. 언론 보도로 인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법에 근거해 고소할 수 있다. 위법사항이 인정된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언론 보도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 받고자 할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독일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제823조는 개인의 삶과 신체,

6) 여기서 ‘문서(Schriften)’는 독일 형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음성 및 그림에 의한 기록, 전자 기록, 사진 및 기타 표현물 형태를 의미한다.

7)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2001. 2. 16).

건강, 자유 및 재산 등에 부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 각 주의 언론법<sup>8)</sup>에서는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반론보도청구권(Gegendarstellungsanspruch)’을 보장한다. 반론보도청구권에 따라서 언론사는 보도된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의 반론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다만 반론의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광고의 목적이 있거나, 기존 보도와 비교해 반론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언론사는 반론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반론 보도 요청은 해당 보도가 처음 이루어진 이후 3개월 안에 서면 형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언론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반론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밖에 <형법> 제131조에 따라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폭력행위를 미화하고 퍼뜨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현대사나 역사적 사건으로서 언론 보도가 되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 디지털 언론 미디어 환경에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Volksverhetzung)’죄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 국가나 종교,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소속 집단에 대해 혐오 발언을 하고 폭력 및 자의적인 조치를 선동하는 행위, 한 집단에 속한 이들을 모욕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진다. 특히 이러한 혐오 발언과 선동 행위를 공공장소에서 퍼뜨리거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조항에 근거한 판결 사례를 보면 가해자는 언론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 피해와 구제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8) 독일에서 언론에 관한 사항은 연방법이 아닌 주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독일 16개 주에서 각각 주언론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과 형식은 거의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작센주 언론법(Sächsisches Gesetz über die Presse)을 참고해 소개한다.

## IV. 독일 언론피해 구제 제도의 새로운 동향

### 1. 독일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

독일은 유럽에서 신문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 매일 일간 신문 1,470만 부, 주간 및 일요신문 400만 부가 판매되는 곳이다.<sup>9)</sup> 이미 형성된 인쇄 매체의 규모와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온라인 언론 환경도 인쇄 매체 주도로 발전되어 왔다. 독일신문발행인연방협회(BDZV)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699개의 독일 신문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sup>10)</sup> 온라인에서 E-Paper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문사는 총 1,227 곳에 이르는데, 독일의 주요 신문사들이 지역판을 따로 발행하고 지역판도 E-Paper 형태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그 수가 많다. 또한 125개의 언론사가 모바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224개 언론사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 제작이나 외부 제작된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도 605곳에 이른다. 이처럼 독일의 수많은 언론사들이 디지털 및 모바일 환경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료 콘텐츠 등을 통한 수익구조 확대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신문발행인연방협회에 소속된 204개 언론사가 현재 월 정기구독, 건당 결제 등 다양한 형태로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위 통계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조사 대상이 독일신문발행인연방협회에 소속된, 즉 기본적으로 종이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한정된 정보라는 점이다. 독일에서는 지면 없이 운영되는 순수한 인터넷 언론 시장이 의미 있는 규모로 형성되지 못했다. 특히 2000년 독일 최초의 인터넷 신문으로 관련 업계에 화제가 되었던 ‘넷차이퉁(Netzeitung)’이 9년 뒤 경제난으로 폐간되면서 인터넷 언론의 사업모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기도 했다. 출판사나 종이신문 없이 운영되는 인터넷 언론은 블로그와 혼용되는 등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으며, 이 분야만을 따로 다루는 협회나 체계적인 통계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순수한 온라인 언론에 대한 동향은 개별 사례를 통

9) Bundesverband Deutscher Zeitungsverleger (2017). Die deutschen Zeitungen in Zahlen und Daten 2018. Retrieved from [http://www.bdzv.de/fileadmin/bdzv\\_hauptseite/aktuell/publikationen/2017/ZDF\\_2017.pdf](http://www.bdzv.de/fileadmin/bdzv_hauptseite/aktuell/publikationen/2017/ZDF_2017.pdf)

10) Bundesverband Deutscher Zeitungsverleger (2017). Märkte & Daten. Retrieved from <http://www.bdzv.de/maerkte-und-daten/digitales/zeitungswebsites>

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면 발행을 하지 않고 운영되는 인터넷 언론은 독일에서 크게 두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기존 언론사가 디지털 세대를 겨냥해서 만든 별도의 인터넷 플랫폼으로 《슈피겔(Spiegel)》의 ‘벤토(<http://www.bento.de>)’, 《차이트(Zeit)》의 ‘체(<https://ze.tt>)’, 《빌트(Bild)》의 ‘노이즈(<https://noizz.de>)’ 등이 그 예다. 둘째로는 지역 및 대안 매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곳으로 ‘라이프치히인터넷차이퉁(<https://www.l-iz.de>)’, ‘라인넥카블로그(<https://rheinneckarblog.de>)’, ‘크라우트리포터(<https://krautreporter.de>)’, ‘코렉티브(<https://correctiv.org>)’ 등이 있다.

## 2. 독일 언론평의회 및 언론윤리강령의 변화

독일 언론평의회는 2008년 11월 정관과 불만처리규정 개정을 통해 불만 심의 대상에 인터넷 언론을 포함시켰다. 독일 언론평의회 정관은 “언론(Presse)이란 전자적 언론매체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불만 접수는 인터넷 매체의 보도뿐만 아니라 뉴스 보도의 성격을 지닌 인터넷 서비스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되는 내용도 언론평의회와 자율규제 대상이 되었다. 언론의 디지털 환경을 감안한 언론윤리강령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2015년 3월 인터넷 이용자가 언론사 사이트의 댓글이나 토론 게시판에 올린 의견이 언론윤리강령을 지키기 못했을 경우 이를 바로 잡는 책임은 편집국에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온라인으로 보도된 뉴스에 대해 정정보도를 할 때는 기존의 뉴스 보도와 연결되어 독자들이 정정보도 사실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추가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공개경고’를 발행할 때도 경고를 받은 뉴스 보도에 바로 연결되어 독자가 공개경고를 받은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한 언론사의 관리 및 책임 소재, 형식에 관한 내용으로 인터넷 언론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윤리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지면 매체를 운영하지 않는 순수 인터넷 언론의 경우 ‘자기의무서약서’를 제출했을 때만 자율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종이 신문을 근간으로 한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이미 해당 출판사가 언론평의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기의무서약서’ 없이도 자율규제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인쇄 매체가 없는 순수 인터넷 언론의 경우 이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율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언론평의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자기의무서약서를 제출한 인터넷 언론은 16곳이다.

한편 독일 언론평의회는 2018년 3월 총회를 열어 언론사 사이트에서 즉석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의 대표성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독일 언론사 사이트에서는 보도된 주제와 관련해 기사 말미에 독자들의 찬반여부를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한 독자는 뮌헨 지역신문인 《뮌히너 메르쿠어스(Münchener Merkurs)》가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뮌헨 공항의 세 번째 활주로 건설에 대한 설문조사가 대표성이 없다며 언론평의회에 제소했다. 이 독자는 해당 설문조사에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할 수 있어 대표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스로 컴퓨터의 쿠키 자료를 지우고 인터넷 전원을 재부팅하면서 같은 설문조사에 192번을 투표했고, 그 결과 해당 사안에 대한 찬성이 43%에서 39%로 줄었고, 반대는 54%에서 58%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언론평의회는 2018년 3월 22일 대표성이 없는 이러한 온라인 설문조사는 대표성이 없음을 적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해당 불만 심의에서 따로 제재 결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안이 온라인 언론의 새로운 현상에 관한 것이며 언론사 측에서도 불만처리위원회가 아닌 언론평의회 차원에서 기본 원칙을 세울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이 나타나면서 언론평의회가 고민하고 원칙을 세워야 할 과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 3. <네트워크집행법> 제정

독일은 2010년대 이후 난민 문제로 인한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독일 정부의 난민 수용 정책에 반대하고 반 이슬람 성격을 보이는 극우단체 ‘페기다(Pegida)<sup>11)</sup>를 선두로 반이슬람 및 외국인 혐오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혐오 발언과 가짜 뉴스의 등장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됐다. 특히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논쟁이 공격적이고 모욕적, 혐오적인 경향을 보이면서 이에 관한 규정이 필요

---

11) 페기다(Pegida)는 ‘서양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 유럽인들의 모임(Patriotische Europäer gegen die Islamisierung des Abendlandes)’의 줄임말로 2014년 10월 창립된 극우성향의 반이슬람, 반난민 단체다.

하다는 공감대가 생겨났고, 독일 법무부는 2015년부터 온라인상의 혐오 범죄를 제대로 관리 혹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 고민의 결과물인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일명 네트워크집행법)><sup>12)</sup>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1일 제정, 10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네트워크집행법>의 주요 골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혐오 발언과 불법적인 게시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네트워크집행법> 제1조에서 정의 내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인터넷 상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리고 타인과 공유하며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한정된다. 언론사가 관리 책임을 지는 언론사 사이트의 경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적인 게시물’이란 독일 형법상 국민 선동 및 모욕, 신앙 및 종교단체에 대한 모욕, 음란물 배포 및 사생활 침해 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불법 행위를 포함한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는 사용자가 올린 불법적인 게시물에 대해 신고하거나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조직 및 기구를 만들어야 하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해당 분야 및 언어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업무에 걸맞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신고된 게시물이 명백하게 위법적인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온 이후 24시간 이내 삭제하거나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 외의 위법적인 게시물은 신고가 들어온 지 7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네트워크집행법> 제2조 ‘보고 의무’ 조항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는 불법 게시물 신고 및 불만 접수 처리 결과에 대해 6개월마다 독일어로 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서비스 사업자에게 최대 50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내에서 공유되는 게시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일차적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한 것이다. 이 법이 겨냥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인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이 미국을 기반으로 한 업체라는 점을 감안해 담당 인력의 전문성 및 보고서 발행에 있어서 독일어를 강조했다. 이 법으로 인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는 해당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불만 접수 기구를 신설하고 반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

12)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2017. 9. 1).

이 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게시물 관련 업무를 ‘인정받는 규제된 자율규제 기구’에 맡길 수 있다고 밝힌 부분이다. 여기서 ‘규제된 자율규제 기구’의 조건은 심의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7일 이내에 심의가 가능한 물리적 환경, 심의 절차 및 재심의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으며, 불만 접수 기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한 기구가 여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의 심의를 함께 맡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하게 보장될 때만 가능하다. 이 조항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전담하는 자율규제 기구가 새롭게 설립되거나 기존의 미디어 자율규제 기구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 것이다.

하지만 <네트워크집행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독일잡지발행인협회(VDZ), 디지털 관련 산업분야 협회인 비트콤(Bitkom), 독일의 국경없는기자회 등 관련업계는 해당 법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으며, 여야와 좌우를 막론한 정치권의 비판도 거세다. <네트워크집행법>이 강한 벌금으로 사업자를 압박하면서 신고된 게시물을 제대로 심의하기보다는 일단 삭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페이스북 등 운영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삭제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 기능으로 사용될 위험성도 있다. 독일 기사당(CSU)은 불법적인 게시물의 경우 직접 삭제하기보다는 사업자가 형사 고발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 게시물의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고 고소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sup>13)</sup> <네트워크집행법>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관리와 관련법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주목된다.

---

13) CSU (2018, 1, 23). 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 verstößt gegen die Verfassung. Post von Staat sanwalt oder Richter macht mehr Eindruck als ein gelöschter Tweet. Retrieved from <https://www.csu.de/partei/partearbeit/arbeitskreise/csunet/aktuelles/2018/netzwerkdurchsetzungsgesetz-netzdg-verstoest-gegen-die-verfassung>

## V. 최근의 언론 분쟁 및 해결 사례

### 1. 독일 언론평의회 불만 심의 사례

독일 언론평의회 설립 이래 불만 심의 건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0년 이후에는 매년 최소 1,300여 건에서 2,000건 이상의 불만 사안이 접수되고 있다. 대규모 참사나 테러 사건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불만 접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독일 언론평의회에 접수된 불만 건수는 2014년 2,009건, 2015년 2,358건, 2016년 1,851건, 2017년 1,788건으로 집계되고 있다.<sup>14)</sup>

〈표 1〉 독일 언론평의회 불만 접수 및 처리 건수

연도 건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수된 불만 건수	1,500	1,347	2,009	2,358	1,851	1,788
처리된 불만건수	670	465	765	1,139	728	474

\* 주: 독일 언론평의회에 접수된 불만 사항 중 심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건수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불만 심의가 이뤄진 건수가 '처리된 불만건수'이다.

\* 출처: 독일 언론평의회

2015년에는 저먼윙스(Germanwings) 비행기의 추락 참사가 발생했고, 이 사건 보도에 대해서만 430건의 불만이 접수되었다. 당시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고의로 추락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황색신문으로 분류되는 《빌트》 등 일부 미디어가 조종사와 희생자들의 사진을 실으면서 언론 윤리적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대해 독일 언론평의회는 조종사의 신원에 대한 보도는 공공의 관심 및 이익 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지만, 희생자와 유가족의 신원과 사진은 공인이거나 유가족의 허락이 있을 때만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15년 연말과 2016년 신년 사이 독일 쾰른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폭력 사태에서는 피의자들의 신원 및 출신 지역을 보도하는 것에 대한 윤리 논쟁이 치열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피의자들의 출신 지역 및 종교적 배경을 알리는 보도는 성급한 일반화를 야기할 수 있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피의자의 출신 및 집단

14) 독일 언론평의회 불만 심의 관련 통계는 해마다 발표되는 언론평의회 연감을 참조했다.

의 특징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언론윤리강령을 추가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독일 뷔르츠부르크, 프랑스 니스와 파리, 벨기에의 브뤼셀 등 유럽지역에서 일련의 테러 사건이 발생했고 관련 보도에 대한 불만이 다수 접수되었다. 대형 사건사고를 보도할 때 발생하는 인격권 관련 문제 이외에 광고와 기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보도도 독일 언론평의회에 자주 접수되는 불만 사항 중 하나다. 광고와 보도 기사의 명확한 구분을 규정한 언론윤리강령 제7조를 위반해 ‘공개경고’를 받은 건수는 2015년 전체 경고 횟수 35건 중 15건, 2016년 총 33건 중 9건, 2017년 총 21건 중 9건에 이른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수익구조에 대한 언론사들의 고민과 여러 시도들이 자주 언론 윤리와 충돌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편 독일 언론평의회에 불만 사항이 접수되는 보도 대상은 지면 보도보다는 온라인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언론평의회에 접수된 사안 총 1,148건<sup>15)</sup> 중 332건이 지면으로 보도된 사안이었고 726건이 온라인 보도, 90건은 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보도된 건이었다. 이 통계는 온라인 보도가 지면 보도보다 더 품질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독자들의 미디어 수용행태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언론평의회는 해석하고 있다. 즉 독자들이 온라인 보도를 더 많이 접할 뿐 아니라 온라인 보도를 캡처하거나 링크를 이용해 접수하는 것이 지면 보도를 복사해서 우편으로 부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 (1) 가짜뉴스 보도

2018년 3월 25일 오후 3시 47분, 독일 만하임을 기반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신문 ‘라인넥카블로그(Rheinneckarblog)’에서 “만하임에서 대규모 테러공격”이라는 제하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sup>16)</sup> 기사 첫 문단은 이렇게 시작된다.

“서유럽에서 가장 큰 테러공격이 만하임에서 발생했다. 현재 136명이 사망했고, 237명이 크게 다쳐 일부는 생명이 위급하다. 약 50여명의 테러리스트들은 마체테 칼과 다

15) <표 1> 수치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 가지 보도를 대상으로 여러 건의 불만이 접수된 경우 중복으로 접수된 건수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독일 언론평의회에 따르면 2017년 총 166건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 모두 1건 이상의 불만이 중복으로 접수되었다.

16) Prothmann, H. (2018, 3, 25). Massiver Terroranschlag in Mannheim. <Rheinneckarblog>. Retrieved from <https://rheinneckarblog.de/25/massiver-terroranschlag-in-mannheim/137678.html>

른 종류의 칼을 들고 사방에서 시내 쪽으로 들이닥쳤다. 이들은 동시에 두 명씩 짝을 지어 25곳을 공격했고, 묵시록적인 피바다를 야기했다.”

언론사는 이 기사를 게재하면서 언론사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마치 소설을 쓰는 것처럼 완전히 꾸며낸 가짜 뉴스였다. ‘라인넥카블로그’가 기사를 올린 지 15분 만에 만하임 경찰은 트위터를 통해 해당 뉴스는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짜 뉴스는 이미 다른 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전파된 이후였다. ‘라인넥카블로그’도 경찰의 트위터 게시물을 캡처한 후 해당 기사에 다시 삽입했지만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았다. 온라인 언론이 발행한 대범한 가짜 뉴스에 대해 독일 언론평의회에 총 4건의 불만이 접수되었다. ‘라인넥카블로그’는 해당 뉴스는 픽션이 가미되고 문학적인 성격을 지닌 ‘곤조 저널리즘(Gonzo-Journalismus)’이라며 편집국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과 가짜 뉴스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확인 없이 거짓 뉴스를 퍼뜨린 다른 매체에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독일 언론평의회는 해당 매체의 거짓 뉴스가 언론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며 2018년 7월 불만처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 독일 언론평의회 불만 심의에서 특히 지적되었던 부분은 ‘라인넥카블로그’의 유료 콘텐츠 운영에 관한 것이었다. ‘라인넥카블로그’는 특정 기사의 경우 중간에 결제를 요구하는 팝업창을 띄우면서 결제를 해야만 기사를 끝까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논란이 되었던 가짜 뉴스도 유료 기사 중 하나였는데, 기사가 가짜 뉴스라는 설명이 이 결제 팝업창 뒤로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가짜 뉴스는 ‘라인넥카블로그’ 측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매체에 대한 시선을 끌고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데 더 힘이 실리게 되었다. 이 사안은 인터넷 언론과 가짜 뉴스, 가짜 뉴스에 대한 반응 및 대처, 온라인 매체의 유료 콘텐츠 등 디지털 환경에 따르는 언론의 이슈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을 끌었다.

한편 이 가짜뉴스 사건은 만하임 법원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리면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2018년 7월 12일 ‘라인넥카블로그’가 가짜뉴스를 발행한 것은 사기 및 인격권을 침해하고 공공의 평화를 위협한 행위라면서 9,000유로 벌금형을 내렸다. ‘라인넥카블로그’ 측은 즉시 이의를 제기해 이 가짜뉴스에 대한 판

단은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상태다. 이 사건은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대한 독일 법원의 첫 판결이 될 예정이다.

## (2) 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 보도

독일 언론평의회는 2016년 7월 23일 “이들이 총기난사의 희생자다”<sup>17)</sup>라는 제하로 독일 뮌헨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희생자들의 사진을 게재한 《빌트》 일요판과 《빌트》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불만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경고 제재를 내렸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희생자들의 사진을 유가족 동의 없이 공개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청소년으로서 더욱 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가해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가해자의 인격 보호보다 공공의 관심이 더욱 큰 사안이라고 밝혔다. 빌트는 공개 경고를 받은 이후 해당 기사에 피해자들의 사진을 삭제하고 언론평의회와 공개 경고를 받은 사실을 명시했지만 편집국 측의 이의 의견도 함께 게시했다. 《빌트》 측은 “피해자의 사망 사진이 아니라 생전의 밝은 모습을 공개한 것으로 인간존엄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엄을 지킨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범죄 피해자의 신상과 사진의 경우 유가족의 동의 하에서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가해자 신상의 경우는 대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다만 가해자가 받아야 할 처벌을 모두 받았을 때는 판단이 달라진다.

《빌트》는 2018년 3월 9일 “데고브스키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건 참담한 일입니다”<sup>18)</sup>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30년 전 독일 글라드벡(Gladbeck) 인질극 사건 생존자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 사건은 1988년 8월 글라드벡에서 디터 데고브스키(Dieter Degowski)와 한스-위르겐 뢰즈너(Hans-Jürgen Rösner)가 여러 명의 인질을 붙잡고 독일과 네덜란드 일대를 돌며 이틀간 인질극을 벌인 일로 ‘글라드벡 인질극’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역사적인 범죄사건 중 하나다. 이 사건으로 10대 인질 두 명과 경찰관 한 명이 사망했다. 당시 기자들이 가해자를 인터뷰하고 가해자들이 도망치는 과정

17) Bild (2016, 7, 23). Das sind die Opfer des Amoklaufs. Retrieved from <https://www.bild.de/regional/muenchen/amoklauf/opfer-muenchen-amok-46959308.bild.html>

18) Fromm, R. (2018, 3, 9). Es ist eine Schande, “dass Degowski frei herumläuft”. <Bild>. Retrieved from <https://www.bild.de/unterhaltung/tv/gladbecker-geiseldrama/es-ist-eine-schande-dass-degowski-frei-herumlaeuft-55049368.bild.html>

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근접 취재해 언론 역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경찰 또한 인질 구조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빌트》는 이 사건의 30주년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인질범의 과거 및 현재 사진, 당시 사망한 피해자의 현장 사진을 함께 보도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인질극 범인이었던 데고브스키의 현재 사진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며 《빌트》에 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 경고 결정의 근거가 된 언론윤리강령 제8조 제1항에서는 이미 지나간 범죄사건에 대해서 다시 보도할 때는 재사회화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중의 공분을 샀던 범죄자라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모두 받은 이후에는 재사회화를 위해 인격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 사건 가해자인 데고브스키와 뢰즈너의 현재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언론 차원에서 이를 보도하고 전파하는 것은 언론 윤리에 어긋난다는 평가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피해자 사진 공개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지났다고 해도 피해자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유가족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3) 기사와 광고 구분

독일 청소년 잡지 《브라보(Bravo)》는 언론사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커피 관련 사진 20장과 온라인에 발행한 커피 브랜드 관련 기사로 2017년 3월 공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브라보》 온라인은 2016년 6월 6일 “스타벅스: 한정 기간-프라푸치노 미니 사이즈가 나온다!”<sup>19)</sup>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이모티콘을 이용해 기자가 직접 작성한 기사처럼 보이지만 명백한 브랜드 광고 기사였다. 《브라보》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사진도 평범한 일상 사진을 올린 것 같지만 브랜드의 로고가 확연히 드러났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광고와 기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브라보》의 인터넷 기사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대해 ‘공개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언론사의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의 게시물도 함께

19) Becker, A. (2017, 3, 24). Presserat beschäftigt sich mit Breitscheidplatz-Berichten und rügt Schleichwerbung bei Bravo Online. <Meedia>. Retrieved from <https://meedia.de/2017/03/24/presserat-beschaefigt-sich-mit-breitscheidplatz-berichten-und-ruegt-schleichwerbung-bei-bravo-online>

심의하면서 독일 언론평의회의 영역 확장을 보여준 사례였다. 다만 《브라보》의 기사와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이후 모두 삭제되었으며, 독자들이 《브라보》가 공개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의 온라인 사이트는 2017년 5월 15일 독일 설탕산업협회의 “제대로 맛보세요!”라는 캠페인의 토론 기사로 “설탕을 다루는 것에서부터”<sup>20)</sup>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타게스슈피겔》의 토론 사이트에 게재되었고, 독자들은 기사 마지막에 가서야 ‘파트너 제공(Partnerangebot)’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해당 기사가 광고비를 받고 보도한 내용임에도 토론의 일부로 편집되어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줬다며 ‘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 《포커스(Fokus)》 온라인 사이트도 광고 기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기사로 ‘공개경고’를 받았다. 《포커스》는 “만약에 당신의 은행이 돈을 원한다면, 레드카드를 보여주세요”<sup>21)</sup>라는 기사에서 은행의 계좌 유지비용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 화면의 위쪽에는 ‘파트너 기사(Partnerinhalt)’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그 바로 아래에는 “특집-진지한 조언”이라고 머리말을 달았다. 기사 본문에는 다양한 은행의 계좌 상품을 비교해 놓은 한 은행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는 링크가 삽입되어 있었다. 특정 은행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집행한 광고 기사였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이 기사가 은행 계좌의 유지비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보도 기사로 보이고, 독자들이 광고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도록 편집되어 있다며 언론윤리강령 제7조 광고와 기사의 구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최근 독일 언론에서는 기사 형식으로 광고하는 이른바 ‘내러티브 광고’가 많이 보이는데, ‘파트너기사’, ‘-로부터 제공받은 기사’, ‘스폰서 기사’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언론평의회는 ‘파트너 제공’이라는 표현 또한 언론윤리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명확하게 ‘광고(Anzeige)’라고 표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20) Spahl, T. (2017, 5, 15). Vom Umgang mit Zucker. <Tagesspiegel>. Retrieved from <https://causa.tagesspiegel.de/opendebate/schmecktrichtig-zuckerwirtschaft/kennen-sie-ihre-kalorienbilanz/vom-umgang-mit-zucker.html>

21) Fokus (2017). Wenn Ihre Bank die Hand aufhält, zeigen Sie ihr die rote Karte. <Fokus>. Retrieved from [https://www.focus.de/regional/nuernberg/ehrlich-beraten/girokonto-gebuehren-das-muss-nicht-sein-wenn-ihre-bank-die-hand-aufhaelt-zeigen-sie-ihre-die-rote-karte\\_id\\_6578135.html](https://www.focus.de/regional/nuernberg/ehrlich-beraten/girokonto-gebuehren-das-muss-nicht-sein-wenn-ihre-bank-die-hand-aufhaelt-zeigen-sie-ihre-die-rote-karte_id_6578135.html)

#### (4) 풍자의 경계

독일 언론평의회에 자주 접수되는 불만 사안 중 하나는 풍자에 관한 것으로, 만평 및 잡지 표지의 풍자가 언론윤리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풍자를 다루는 독일 언론평의회 판단은 대체로 관대한 편이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2018년 5월 15일 《쥐드도이체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이 발행한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만평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쥐드도이체차이퉁》은 유럽 최대의 음악 경연 대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최종 우승한 이스라엘 출연자의 얼굴을 네타냐후 총리의 얼굴처럼 그리고 미사일을 들고 있는 만평을 게재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는 문구도 덧붙였다. 이 문장은 당시 우승자가 팔레스타인과 분쟁지역으로 있던 예루살렘을 언급해 비판 여론이 일었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독자들은 이 만평이 ‘반유대주의(Antisemitismus)’를 조장하며 나치 독일 당시 발행된 잡지 《슈튀머(Stürmer)》의 만평을 떠올리게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만평에 대해 총 8건의 불만이 독일 언론평의회에 접수되었다. 만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쥐드도이체차이퉁》은 만평을 발행한 것을 사과하고 만평가 디터 하니치(Dieter Hanitzsch)와의 계약을 해지했다.<sup>22)</sup> 하지만 독일 언론평의회 판단은 여론과 달랐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이스라엘 총리의 얼굴이 과장되긴 했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는 수준으로 한 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언론윤리강령 제12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치 전범의 역사가 있는 독일에서 ‘반유대주의’는 비교적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데도 불구하고 풍자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의 여신상의 목 부분을 절단해 들고 있는 2017년 2월 4일자 《슈피겔》의 표지 그림에 대해서도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슈피겔》의 이 표지 그림으로 총 21건의 불만이 접수되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해당 만평이 자극적이지만 정치 보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언론사는 미국 대통령의 논란이 되는 행동과 자유에 대한 그의 생각을 풍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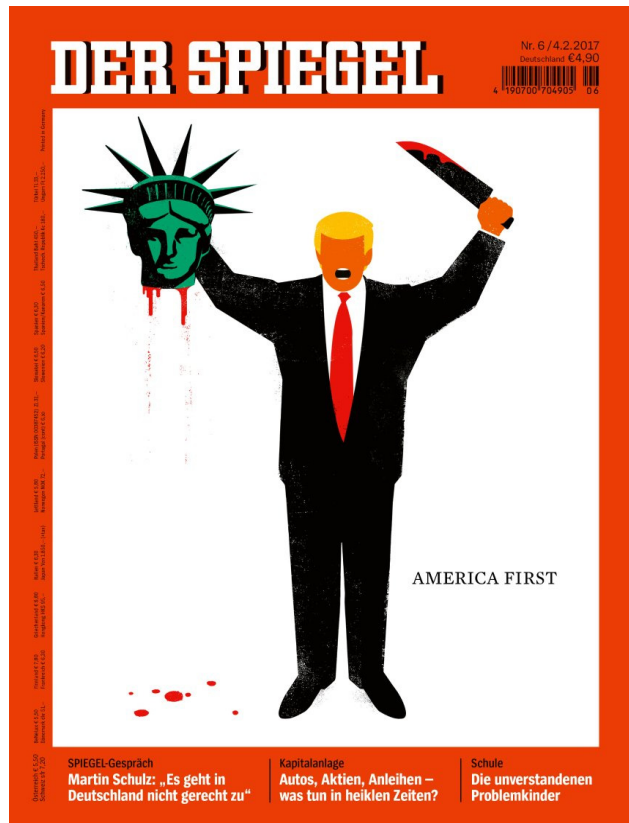
---

22) ARD (2018, 5, 17). “SZ” trennt sich von Karikaturisten. Retrieved from <https://www.tagesschau.de/inland/hanitzsch-karikatur-presserat-101.html>

[그림 3] 《퀴드도이체차이퉁》이 2017년 5월 15일 발행한 만평



[그림 4] 2017년 2월 4일 발행된 《슈피겔》 표지



## (5) 혐오 게시물에 대한 뉴스포털의 책임

독일의 온라인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OVb24.de'에서는 지역의 정당이나 협회가 회원가입을 한 후 조직의 보도자료나 기고문을 직접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제3자가 올린 게시물은 '외부제공 게시물(Inhalte Drittanbieter)'로 표시된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2017년 12월 이 사이트에 올라온 독일 정당 AfD<sup>23)</sup> 소속 정치인의 국민선동적인 게시물에 대해 '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언론윤리강령은 인터넷에서 사용자가 직접 올린 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는 사이트를 관리하는 언론사의 책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AfD 소속 정치인이 올린 혐오적 발언이 담긴 게시물을 그대로 올린 것은 언론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독일 언론평의회는 지적했다. 또 사용자의 게시물이 언론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게시물을 발행해서는 안 되며 '제3자 제공'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례는 독일 언론평의회가 특정 언론사 사이트뿐만 아니라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도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언론사가 직접 생산하는 기사가 아닌 제3의 사용자가 생산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공개경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 소송을 통한 언론 분쟁 및 해결 사례

### (1) 혐오 발언 처벌

독일에서 혐오 발언은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Volksverhetzung)'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독일 나치의 전쟁 범죄를 옹호하는 발언이나 행위, 다른 소속 집단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는 발언이나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독일에서는 최근 반난민과 반이슬람, 반외국인 정서로 인해 국민선동죄에 해당하는 혐오 발언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더 빨리 전파되고 있다. 혐오 발언에 대한 법적 분쟁과 처벌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23) AfD는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의 줄임말로 2013년 6월 창당된 민족주의 극우성향의 정당이다. 페기다(Pegida)와 함께 독일의 반난민, 반이슬람 정서를 확대하고 있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2014년 8월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에 수차례 홀로코스트를 옹호하는 발언을 올린 34세 남성에게 대해서 국민선동죄로 벌금형 5천 유로를 선고했다.<sup>24)</sup> 이 남성은 페이스북의 한 공개 그룹에 “이 모든 거짓말 이후에는 나는 점점 홀로코스트의 진실에 대해 의심이 든다!!”, “그런데 쫓기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모두 거짓이다! 모두 선전이다! 증거는 어디 있는가?”,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스스로도 책임이 있다(후략).” 등의 코멘트를 달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나치 전범이 유대인에게 저지른 대량 학살을 부정했으며 이러한 표현은 공공의 평화를 해치는 것으로 피고인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코멘트 뒤에 이모티콘을 함께 사용했고, 그만큼 진지한 발언이 아니었으며 사람들을 자극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올린 페이스북 코멘트를 34명만 읽은 것으로 확인되어 확산 범위가 크지 않다고 하며 벌금을 5천 유로로 책정했다.

2016년 1월 25일, 독일에서 직업 군인으로 일하던 한 남성은 평소 즐겨 보던 언론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난민에 대한 기사를 보고 기사가 링크된 페이스북에 난민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여러 차례 남겼다. 그는 “독일은 국경을 단장막고 불법적인 이주자나 난민들을 단장 쫓아내야 한다”면서 ‘원숭이’, ‘벌레’, ‘천민’ 등의 경멸적인 단어로 난민들을 지칭했다. 그는 이틀에 걸쳐 6건의 혐오 댓글을 작성해 국민선동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독일 데트몰트 지방법원은 2016년 10월 26일 피고인에게 3,750유로의 벌금형을 부과했다.<sup>25)</sup> 피고인은 상위 법원에 항소했지만 데트몰트 주법원, 주고등법원 모두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나 난민을 악의적인 방법으로 비난해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했으며, 혐오적인 단어를 이용해 외국인과 난민을 천대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이 페이스북 프로필에 본인이 직업 군인이라는 것을 공개한 이상 그의 발언은 개인의 의사표현이 아니라 외국인의 헌법적 권리도 보호해야 할 기대를 지닌 군인의 의사표현이라고 강조했다.

24) Rechtsindex (2015, 11, 13). “Juden sind am Holocaust selber schuld” - Nach Facebook-Hetze folgt 5000 Euro Geldstrafe. Retrieved from <https://www.rechtsindex.de/recht-urteile/5294-juden-sind-am-holocaust-selber-schuld-nach-facebook-hetze-folgt-5000-euro-geldstrafe>

25) 독일 판례: *LG Detmold*, 27.04.2017 - 25 Ns-21 Js 242/16, *OLG Hamm*, 07.09.2017 - 4 RVs 103/17

독일 《노드베스트차이퉁(Nordwest Zeitung)》은 자사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외국인 혐오 댓글을 단 사용자를 직접 검찰에 고발해 주목을 끌었다. 《노드베스트차이퉁》은 2016년 5월 25일 창가에 매달려 떨어질 위기에 처한 흑인 아이를 구한 환경미화원들의 사연을 보도했다. 《노드베스트차이퉁》은 기사를 보도하며 페이스북에도 링크를 달아 함께 게시했다. 이 사연은 당시 독일 전역에 알려져 화제가 된 미담 기사였지만 한 인종주의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이 사용자는 언론사 페이스북에 “환경미화원이 그 아이를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처리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언론사 편집국은 해당 댓글을 발견한 직후 삭제했으며, 더 나아가 해당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올덴부르거 지방법원은 2017년 8월 국민선동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sup>26)</sup>하고 사회봉사활동 60시간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아직 1심 판결만 난 상태이지만, 온라인의 혐오 발언을 단순히 삭제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사 측이 직접 고발한 사례로 언론사의 대응 범위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2) 개인의 명예훼손, ‘라바우케 사냥꾼’

2014년 6월 3일 독일 지역 신문사 《노드쿠리어(Nordkurier)》는 지역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진 한 장을 싣는다. 한 운전자가 자동차 뒤에 노루를 매달고 도로를 달리는 장면이었다. 목격자는 뒤에서 이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고, 《노드쿠리어》도 이 사진을 보도하면서 “라바우케 사냥꾼(Rabauken Jäger)”이라는 표제를 달았다. ‘라바우케’는 주로 사고를 치고 다니거나 허세를 부리는 아이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다. 운전자는 그 노루는 이미 죽어있었고 교통에 방해가 될 것 같아 100미터 정도를 끌고 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밝히며 자신을 ‘라바우케’라고 표현한 언론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파제발크 지방법원은 2015년 5월 20일 이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기자에게 벌금 1천 유로를 선고했다. 법원은 ‘라바우케’라는 단어는 주로 어린이에게 쓰이는 것으로 성인 남성에게 쓰기에 적절한 표현이 아닌데다가 강하고 거친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드쿠리어》 언론사와 기자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결도 1심과 같았다.<sup>27)</sup> 이 판결은 ‘라바우케 판결’이라고 불리

26) Schwerdtfeger T. (2017, 8, 24). Nach Hasskommentar im Netz verurteilt. <NWZ Online>. Retrieved from [https://www.nwzonline.de/blaulicht/oldenburg-prozess-gegen-oldenburger-nach-hasskommentar-im-netz-verurteilt\\_a\\_32,0,2696642693.html](https://www.nwzonline.de/blaulicht/oldenburg-prozess-gegen-oldenburger-nach-hasskommentar-im-netz-verurteilt_a_32,0,2696642693.html)

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연관되어 독일 전역의 관심을 끌었다. 언론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1심 판결 이후 《빌트》는 《노드쿠리어》 기사를 캡처한 이미지를 그대로 실으면서 “결국에는 무죄”라는 표제를 달았다. 해당 보도에 대한 연대를 표현한 것이다. 2심 판결 이후에는 독일 신문발행인연방협회가 ‘라바우케’라는 단어는 명백하게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는 단어이며, 그래서 이때까지 처벌된 적이 없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라바우케’라는 표현을 쓴 기자는 최종심에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로스톡 주고등법원은 2016년 9월 9일 이 단어는 거친 행동을 하는 성인 남성을 묘사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독자 입장에서는 문학적이고 냉소적인 방식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며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은 법원이 기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오히려 대중의 관심이 극대화된 경우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로 인식되면서 언론계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결국 무죄 판결이 난 이 사건에 대해 독일 판사 출신 변호사 데트레프 부르호프(Detlef Burhoff)는 ‘별 것 아닌 일이 요란했다’<sup>28)</sup>고 평가하기도 했다.

### (3)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요르그 카헬만의 잃어버린 명예<sup>29)</sup>

독일 공영방송 ARD의 기상 전문 앵커였던 요르그 카헬만(Jörg Kachelmann)은 2000년 3월 옛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카헬만은 2010년 7월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결정이 나기까지 약 14개월간 구금되었으며, 2011년 5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그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체포되는 극적인 첫 장면부터 무죄판결이 나기까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빌트》, 《분테(Bunte)》 등 독일의 대중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그의 사생활과 구금 생활을 일거수일투족 보도했다. 《빌트》는 2010년 4월 10일 “요르그 카헬만이 교도소에서 햇볕을 즐기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가 교도소 마당에 있는 사진을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독일에서 가장 사랑받던 기상 전문가, 지금은 가장 유명한 재소자의 새로운 일상을 엿

27) 독일 판례: *OLG Rostock*, 09.09.2016 - 20 RR 66/16, 1 Ss 46/16

28) Burhoff, D. (2016, 10, 17). Rabaukenjäger - das war es, oder: Viel Lärm um nichts?. Retrieved from <https://blog.burhoff.de/2016/10/40874>

29) 독일 판례: *LG Mannheim*, 31.05.2011 - 5 KLS 404 Js 3608/10, *OLG Köln*, 12.07.2016 - 15 U 175/15

보자. 어제 낮, 이 TV 사회자는 교도소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다. 햇볕이 비치고, (섭씨 16도, 북동쪽에서 부는 약한 바람) 재소자들은 운동장을 돌았다. 그들 뒤에 ARD 앵커가 있다. 카헬만은 청바지와 어두운 청자켓을 입고 있다(후략).”

이외에도 《빌트》는 “그의 성생활은 매우 다채로웠다”, “그와 사랑을 나눈 7명이 말한다”,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는 웃고, 그의 전 연인은 울고 있다” 등 수차례에 걸쳐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았다. 무죄판결이 났지만 카헬만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이후였다. 형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는 ARD에서 해고되었고, 그동안 쌓아온 기상학자 및 공인으로서의 커리어는 사실상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그는 《빌트》, 《분테》, 《포쿠스(Fokus)》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분테》와 《포쿠스》를 발행하는 ‘후베르트 부르다 미디어(Hubert Burda Media)’ 기업과는 재판 전 조정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합의했지만, 《빌트》와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먼저 2015년 9월 30일 쾰른 주 법원은 《빌트》에게 손해배상금 63만 5천 유로를 카헬만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당시 독일 법원이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 판결한 가장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이었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다. 카헬만 측은 《빌트》에게 이 손해배상금은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비판했으며, 《빌트》 또한 1심 판결 이후 “카헬만에게 100만유로는 안 되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반목을 이어갔다. 2심인 쾰른 주고등법원에서는 《빌트》가 보도한 40여건의 기사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이 51만 3천 유로로 책정되었다. 1심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수치로 이중 39만 5천 유로는 손해배상액이며, 11만 8천 유로는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법원은 “《빌트》 신문과 《빌트》 온라인 보도는 허용된 선을 자주 넘었고, 카헬만의 인격권을 심하게 손상시켰다”면서 “특히 카헬만이 교도소 마당에 있는 사진을 보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쾰른 주고등법원은 이 판결과 함께 연방대법원에 대한 상고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빌트》는 연방대법원에 상고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2018년 4월 14일 연방대법원은 《빌트》의 항고를 기각, 쾰른 주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언론 보도로 인해 삶이 파괴된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의 소설 〈카타리나 볼름의 잃어버린 명예〉에 빗대어 ‘요르그 카헬만의 잃어버린 명예’로 불렸다. 독일 언론 분야 전문매체인 《MEEDIA》<sup>30)</sup>는 “사람들이 좋아 하든 좋아하지 않든 황색신문은 그들이 늘 하던대로 보도했다”면서 “언론이 소극적으로

보도했었다면 카헬만은 무죄 판결 이후 ARD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 이걸 사회적 문제였고, 언론 보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언론이 보도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으며 빌트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 (4) 외국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 ‘뵘머만 스캔들(Böhmermann-Affäre)’

2016년 3월 31일 독일 제2공영방송 ZDF의 하위 채널인 ‘ZDFneo’에서 방영하는 시사 풍자 프로그램 〈Neo Magazin Royale〉에서 코미디언 얀 뵘머만(Jan Böhmermann)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을 비하하는 풍자시를 낭송했다.

“비겁하고 고집스러운 놈, 그는 에르도안, 대통령. 그의 거시기는 역겨운 되너(케밥) 냄새가 나, 차라리 돼지 방귀 냄새가 더 좋아. 가면을 쓰고서 소녀를 때리고, 염소들과 성교하며 소수자를 짓누르는 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 쿠르드족들을 밟아버리고, 기독교도들을 후려치며, 아동 포르노를 보기도 하지(후략).”

표현 수위가 높은 풍자시로 뵘머만은 국내외로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016년 4월 8일 뵘머만을 형법상 외국 원수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당시 형법상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죄는 독일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데, 독일 정부가 4월 13일 뵘머만에 대한 형사소추를 전격 허용하면서 이 사건은 ‘뵘머만 스캔들’로 불리며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4월 14일 공영방송국 ZDF는 뵘머만이 낭독한 풍자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형법의 경계를 넘지 않았다는 공식적인 의견표명서를 발표한다. ZDF 측은 헌법에 보장된 풍자의 자유는 공공의 관심에 따라 거친 표현 형식도 포함하고 있으며, 풍자는 의도적으로 과도한 묘사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감정과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한 이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중들의 시선이 집중된 이 사건에 대해 독일 검찰은 결국 10월 4일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sup>31)</sup> 하지만 뵘머만은 형법적 판단과 별개로 민사

30) Altroge G. (2015, 9, 30). Die verlorene Ehre des Jörg Kachelmann - und welche Rolle die Medien dabei (nicht) spielten. 〈Meedia〉. Retrieved from <https://meedia.de/2015/09/30/die-verlorene-ehre-des-joerg-kachelmann-und-welche-rolle-die-medien-dabei-nicht-spielten>

소송을 피해갈 수 없었고, 민법상의 판단은 다르게 나왔다.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2016년 5월 17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제기한 뵘머만의 풍자시 낭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풍자시의 일부 표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와 신청자의 인격권을 고려했을 때 풍자시의 일부 표현은 완전한 비방이며, 틀을 갖춘 모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종적인 편견과 종교적 비방, 성적 표현들은 경계를 넘어선 부분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조롱했고, 에르도안은 이 모욕을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적시했다.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풍자시 일부가 아닌 전체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며, 뵘머만은 시의 전체적 맥락을 평가하고 에르도안이 그를 비판하는 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고려되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2017년 2월 10일 함부르크 주법원은 예술과 풍자의 자유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면서 가처분 인용 부분을 그대로 인정했다. 특히 에르도안을 성도착적으로 묘사한 것과 무슬림에게 돼지고기가 지니는 의미를 고려했을 때 돼지를 이용한 표현은 에르도안에게 더욱 모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2018년 5월 15일 함부르크 주고등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sup>32)</sup> 뵘머만은 이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며 독일 연방대법원은 물론 필요하다면 연방헌법재판소에도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인해 외국 원수의 모욕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형법 조항이 폐지되었다. 그동안 독일 사회에서 표현 수위가 강한 풍자도 폭넓게 인정되었던 만큼 앙겔라 메르켈 정부가 뵘머만에 대한 형사소추를 허용한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일었다. 메르켈 총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중시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긴 했지만, 검찰에게 형사소추를 허가한 것 자체가 이미 뵘머만의 풍자시를 범죄적 행위로 보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에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를 구속하는 등 언론탄압으로 대외적인 비판을 받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목소리에

31) Keller, A. (2016, 10, 4). Pressemeldung Staatsanwaltschaft Mainz. Retrieved from <https://stamz.justiz.rlp.de/de/startseite/detail/news/detail/News/pressemeldung-staatsanwaltschaft-mainz-1>

32) 독일 판례: *OLG Hamburg*, 15.05.2018 - 7 U

더 힘이 실렸다. 이 사건은 현재 형사적 판단과 민사적 판단이 엇갈리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풍자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태이다.

#### (5) 반론권 청구권, 《슈피겔》과 토마스 고트샬크(Thomas Gottschalk) 판결

《슈피겔》은 2013년 1월 독일 제2공영방송 ZDF의 유명한 TV쇼 ‘베티텐 다스(Wetten, dass...?)’의 진행자인 고트샬크가 의도적으로 특정 회사의 광고 문구를 말하는 등 불법광고(Schleichwerbung)를 했다고 보도했다.<sup>33)</sup> 슈피겔은 기사 발행 전 고트샬크 측의 해명을 듣고자 했지만, 고트샬크의 변호사는 이를 거부했고 통화상의 대화도 기사에 신지 말 것을 요구했다. 결국 기사는 고트샬크 측의 해명 없이 보도되었고 이후 고트샬크는 정식으로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슈피겔은 이를 거부했다. 기사 보도 이전에 충분히 해명의 기회를 줬다는 이유였다. 결국 이 사건은 ‘반론권(Gegendarstellung)’을 둘러싼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먼저 함부르크 주법원은 2013년 3월 주언론법의 반론권 청구 조항에 따라 《슈피겔》이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 법원은 《슈피겔》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도 역시 고트샬크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보도 이전에 의견표명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론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은 함부르크 고등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슈피겔》은 법원의 결정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지만 2018년 4월 9일 《슈피겔》의 제소를 기각하면서 당사자의 반론권에 손을 들어줬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 보도의 당사자가 보도 이전에 의견을 표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반론권 청구는 오직 사실을 주장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sup>34)</sup>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진실이 아닌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반론권’에 힘을 실어준 판결

33) Spiegel (2013, 1. 12). Schleichwerbung bei “Wetten, dass..?”

Die dubiosen Deals der Gottschalk-Brüder. <Spiegel> Retrieved from <http://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spiegel-die-gottschalks-boten-schleichwerbung-bei-wetten-dass-an-a-877200.html>

34) 독일 판례: BVerfG, 09.04.2018 - 1 BvR 840/15

로 해석되고 있다. 언론 보도의 대상자들은 보도 전 언론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이루어진 언론 보도와 그 보도를 접한 독자들의 반응을 먼저 살펴본 후 반론 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공인에 대한 비판 및 고발 보도를 할 때 ‘사전에 해명할 기회를 제공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식의 표현을 많이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독일의 반론권 해석에 따르면 보도의 당사자는 언론에 미리 해명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언론 또한 단순히 해명의 기회를 준 것만으로 언론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 VI. 결론

독일 언론평의회를 ‘언론평의회 구제 제도’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언론 피해자보다는 언론 내부의 윤리와 자정작용을 위한 시스템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독일 언론평의회에 접수되는 불만 사례는 언론과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언론 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가 많으며, 언론 보도로 인해 손해를 본 피해자가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독일 언론평의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공개경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이나 피해 구제를 해주지 못한다. 독일 언론평의회 ‘공개경고’를 자주 받는 언론사 중 하나인 《빌트》는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성실히 알리면서도 해당 보도를 수정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언론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결국 민형사상의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독일 사회나 언론계에서 이슈가 된 많은 사건들이 독일 언론평의회 심의보다는 언론 관계 소송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졌으며, 사안의 중요성도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시스템과 그 효력이 가지고 있는 차이 때문일 것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함께 언론과 온라인 플랫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와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독일이 2017년 9월 〈네트워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의 책임 소재는 오히려 불분명해지거나 역할이 중복되고 있다. 독일 언론평의회는 온라인 언론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서 조

직과 언론윤리강령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제도를 바꾸기에는 현상의 속도가 더 빠르며 변화의 폭도 큰 게 사실이다. 독일 언론평의회가 좀 더 실효성 있고 강력한 시스템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적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독일 언론평의회는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독일 언론평의회가 담당하지 않는 영역을 규정하기 위해 강력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오히려 사회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성이 높아진 것이다. 레거시 미디어가 자신들의 시스템 안에서 외부 개입을 막는 데 치중하는 동안 언론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네트워크 시대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격권의 충돌 양상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독일 언론평의회가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 역할과 의미는 점점 더 축소되고 또 다른 언론피해 구제 시스템에 그 자리를 내줘야 할 것이다.

- Baum, A. (2010). Deutscher Presserat. In C. Schicha, & C. Brosda (Hrsg.), *Handbuch Medienethik* (186-216).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Bermes, J. (1989). Deutscher Presserat nach der Reform. *Ohne Biß auch mit den dritten Zähnen*. In *Die Feder*(10), 43-47.
- Bermes, J. (1991). *Der streit um die presse-selbstkontrolle: Der deutsche presserat: eine untersuchung zur arbeit und reform des selbstkontrollorgans der bundesdeutschen presse*. Baden-Baden: Nomos.
- Deutscher Presserat (1993). Verhaltensgrundsätze für Presse/Rundfunk und Polizei zur Vermeidung von Behinderungen bei der Durchführung polizeilicher Aufgaben und der freien Ausübung der Berichterstattung. Retrieved from [https://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Stellungnahmen/Verhaltensgrundsätze\\_Presse\\_Polizei.pdf](https://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Stellungnahmen/Verhaltensgrundsätze_Presse_Polizei.pdf)
- Deutscher Presserat (2012). *Jahrbuch mit der spruchpraxis des jahres 2011*. Konstanz: UVK.
- Deutscher Presserat (2015). Satzung und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Presserats. Retrieved from [http://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_Dateien/Satzung\\_StandSep.2015\\_web.pdf](http://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_Dateien/Satzung_StandSep.2015_web.pdf)
- Deutscher Presserat (2016). Jahresbericht 2016. Retrieved from [http://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_Dateien/Jahresbericht\\_2016.pdf](http://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_Dateien/Jahresbericht_2016.pdf)
- Deutscher Presserat (2017). Beschwerdeanleitung. Retrieved from [https://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_Dateien/Beschwerdeanleitung.pdf](https://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_Dateien/Beschwerdeanleitung.pdf)
- Deutscher Presserat (2017). Chronik des Deutschen Presserats 1956 - 2013. Retrieved from [http://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_Dateien/Chronik2013\\_web.pdf](http://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_Dateien/Chronik2013_web.pdf)
- Deutscher Presserat (2017). Die Finanzierung der Presseselbstkontrolle. Retrieved from [http://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_Dateien/FinanzierungPresseselbstkontrolle.pdf](http://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_Dateien/FinanzierungPresseselbstkontrolle.pdf)

- Deutscher Presserat (2017). Jahresbericht 2017. Retrieved from [https://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Aktuelles/Jahresbericht\\_2017\\_web.pdf](https://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Aktuelles/Jahresbericht_2017_web.pdf)
- Deutscher Presserat (2017). Publizistische Grundsätze (Pressekodex). Richtlinien für die publizistische Arbeit nach den Empfehlungen des Deutschen Presserats. Retrieved from [http://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_Dateien/Pressekodex2017light\\_web.pdf](http://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_Dateien/Pressekodex2017light_web.pdf)
- Heimann, F. (2009). *Der Pressekodex im Spannungsfeld zwischen Medienrecht und Medienethik*. Frankfurt am Main: Lang.
- Münch, H. (2002). *Freiwillige Selbstkontrolle bei Indiskretionen der Presse: Ein Vergleich des deutschen und englischen Rechts(1. Aufl.)*. Baden-Baden: Nomos.
- Musialek, H. (1980). *Press Council und Deutscher Presserat: Form und Funktion der Presseselbstkontrolle in Großbritannien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Philipps-Universität zu Marburg.
- Schade, M. (2017. 03, 23). "Auch die neue Richtlinie ist tendenziös": Redaktinnen kritisieren die Aktualisierung der Pressekodex-Ziffer 12.1. <Meedia>. Retrieved from <http://meedia.de/2017/03/23/auch-die-neue-richtlinie-ist-tendenzioes-redaktionen-kritisieren-die-aktualisierung-der-pressekodex-ziffer-12-1>
- Schiwy, P., Schutz, W., Dorr, D., Barton, D., & Di Fabio, U. (2010). *Medienrecht: Lexikon für Praxis und Wissenschaft (5. Aufl.)*. Köln: Heymann.
- Soehring, C. (1999). *Vorverurteilung durch die Presse: Der publizistische Verstoß gegen die Unschuldsvermutung*. Baden-Baden: Nomos.
- Stapf, I. (2006). *Medien-Selbstkontrolle: Ethik und Institutionalisierung*. Konstanz: UVK.
- Tillmanns, L. (1998). *Probleme der Kriminalberichterstattung in der Arbeit des Deutschen Presserates*. In D. Dölling, & E. Behrschmidt (Hrsg.), *Kriminalberichterstattung in der Tagespresse: Rechtliche und kriminologische probleme*. Heidelberg: Kriminalistik-Verl.
- Wehner, O. (2017). Vierteljahresbericht des Intendanten über Programmbeschwerden und wesentlichen Eingaben zum Programm, *Westdeutscher Rundfunk Köln*, p.8.